2015년도 제13회 가맹거래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 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 명
1교시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100분		

1.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게 된 乙은 「닭고기 관련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甲과 경기도 화성시 일부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프라이드 치킨 가맹계약」을 2014년 10월 1일에 3년 기간으로 체결하였다. 당시 가맹계약서상에는 "甲이 乙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 직영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乙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甲은 2015년 5월 1일 乙의 동의없이 그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丙과 「닭강정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0점)

 (1) 甲이 丙과 체결한 「닭강정 가맹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2) 乙의 영업지역 일부분이 동탄 신도시에 편입되었고, 인구가 크게 늘어난 그 신도시에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자들이 다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과 새롭게 「프라이드 치킨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甲이 乙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25점)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예상매출액 산정서」제공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